

2025년 「대덕구 배달강좌제」 운영 매뉴얼

※ 운영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, 배달강좌의 모든 구성원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평생학습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.

제1장 총 강

제1조(목적)

- ① 배달강좌제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학습을 배달해 주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학습서비스로 “행복한 학습도시 대덕”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진행 절차)

- ① 배달강좌는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.
- ② 학습자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및 강좌신청 → 강좌선정 → 강좌실시 → 강좌평가(만족도 조사) 순으로 진행한다.
- ③ 강사의 경우에는 강좌배정 → 운영계획서 제출 및 승인 → 강좌실시 → 강좌 운영결과보고 및 평가 → 강사료 지급 순으로 진행한다.

제2장 배달강좌 기본운영

제3조(강좌 분류) 배달강좌는 한국 평생교육프로그램 7분류표에 의한 표준 강좌를 기준으로 운영한다. (※기초문해, 학력보완, 직업능력, 문화예술, 인문교양, 시민참여, 성인진로개발교육)

제4조(강좌 시간)

- ① 학습자 1인이 수강할 수 있는 강좌는 동일 회차의 운영기간 내에 1인 1강좌로 제한한다.
- ② 강좌는 1강좌 당 최대 20시간으로 운영하되, 1주에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단, 시설대관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특정기간이나 회계연도 내에 강좌를 종료해야 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.

제5조(강좌 장소)

- ① 강좌 장소는 대덕구 관내에 한하며, 해당 장소 관련 영리 행위와 관련이 없이 배달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고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좌 신청 시 지정한 장소의 변경은 불가하다.(장소 변경을 위해서는 강좌운영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.) ※ 다음(강좌 운영장소로 제한되는 경우)의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한다.

[강좌운영 장소로 제한되는 경우]

- 강사가 운영하는 사업장(배달강좌 운영 강좌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하는 사업장)

- 특정 집단만 출입가능하거나, 출입 연령제한이 있는 장소, 유흥시설, 사행성 관련 등 미풍양속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장소
 - 학습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
 - 이 외,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담당 부서가 판단하는 경우
- ② 배달강좌 운영에 필요한 학습장소는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하며, 개인 및 공공장소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(기관)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종교시설 및 특정 정당 사무실 등을 학습장소로 사용할 경우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종교 및 정치 이념에 일체 관여 하여서는 안 된다. 또한, 학습장소에서의 교육활동 가능 여부는 해당 장소를 관리, 감독하는 규정 및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따르며, 강좌 장소로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해석은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④ 강좌운영 시에는 반드시 "배달강좌 운영 중"임을 알리는 표시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3장 학습자

제6조(신청 자격)

- ①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배달강좌를 신청한다.
- ② 학습자는 1팀당 5인 이상(단, 전염병 관련 거리두기 인원 적용 시 학습가능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)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학습자의 과반 수 이상은 대덕구민 이어야 한다.
- ③ 학습자 대표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득한 후 반드시 학습자 대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 강좌 운영에 관해 강사 및 담당 부서와 소통한다.
- ④ **팀원의 동의 없이 강좌를 신청하거나,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강좌를 신청한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강좌의 신청은 취소되며, 강좌 운영 도중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강좌 운영이 즉시 중지된다.**
- ⑤ 대덕구 생활권자는 배달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습자가 속한 기관은 대덕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곳이어야 한다.

제7조(학습에 필요한 비용)

- ① 배달강좌 활성화를 위해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.
단,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수강료 등을 지정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대덕구 평생학습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강좌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는 학습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강사와 학습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강좌 신청)

- ①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.
- ② 강좌는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
제9조(강좌 신청 제한)

- ① 학습자는 정규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강좌 내용에 관한 교육을 강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.
- ② 학습 특성상 전용 기자재 등이 필요한 경우, 학습자 1인당 1기자재가 구비되어야 한다.

제4장 배달강사

제10조(강사 선정)

- ① 강사는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강사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 최종 선정된 자를 말하며,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.
- ② 모든 강사는 개강 전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따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조회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강사 활동을 금지한다.
- ③ 강좌를 배정받은 강사는 대덕구 평생학습원에 강사위촉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경력증명서는 해당 강의 종료 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.

제11조(강좌 운영)

- ① 강사는 학습자의 강좌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학습자와 최종 협의한 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,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강사는 강좌일시, 학습장소, 학습인원 등 운영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홈페이지에 변경계획서를 제출,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변경 계획 승인 전 운영된 강의는 인정되지 않으며,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다.
- ④ 강사는 대덕구 배달강좌 담당부서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하게 강의를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학습자 관리)

- ① 강사는 강좌 운영 시 학습자들의 출결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강사는 학습자와 재료비 또는 교육내용 등 충분한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학습자에게 교육에 대한 대가로 추가의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.
- ③ 강사는 강좌 운영 중 알게 된 학습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도용·활용하거나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④ 배달강좌 운영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강사의 사적 이익(개인 교습 수강생모집, 판매 목적의 교재 구매 등) 추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, 강사의 영리활동을 위해 임의로 학습 팀 형성 및 활동하는 것은 강좌 선정과 점검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다.

제13조(강좌 종료)

- ① 강좌는 회차별 정해진 기한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.
- ② 강사는 강좌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당부서가 정하는 제출경로에 따라 운영 사실과 다른 없이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, 이와 함께 강사료 청구서, 출석부, 통장 사본 등을 평생학습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강사료)

- ① 강사료 지급의 단위는 1시간을 60분으로 하며, 강사 모집과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- ② 강사료는 운영계획서와 동일하게 운영된 강좌에 한 해 지급되며, 종강이나 폐강된 강좌의 경우, 최종 운영 승인된 회차까지만 지급한다.

제15조(강사 준수사항)

- ① 강사는 배달강사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좌에 임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강사는 대덕구에서 실시하는 배달강사 워크숍, 의무교육,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평생학습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대덕구 평생학습원은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당해 연도 강사 활동에 제약을 둘 수 있다.
- ③ 강사는 강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, 강사 자격이 정지되며 이에 관한 내용은 필요시 유관 기관과 공유한다.
- ④ 강좌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(모니터링) 및 학습자 만족도를 강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⑤ 강사는 타당한 사유 없이 배정된 강좌를 거부할 수 없으며, 특정 학습자의 강좌 배정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강사 자격 정지는 배달강좌 운영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1회 경고 후 재발 즉시 자격 정지되며, 다음 연도 1년간 대덕구 배달 강사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.

※ 운영 규정 위반사항 :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수업을 진행 한 경우 등

제5장 강좌 선정, 강좌 배정 등

제16조(강좌 선정)

- ① 배달강좌 선정은 개설된 강좌에 대한 학습자의 신청으로 최초 선정된다.
- ② 배달강좌 운영 중 필요에 따라 추첨 등을 통하여 운영 강좌를 최종 선정할 수 있다.
- ③ 강좌 운영 제반 요소(학습 내용, 운영장소, 필요 비용 등)에 대해 구성원 간 협의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.

제17조(강좌 배정)

- ① 강사가 동시에 배정받을 수 있는 배달강좌 수는 강사의 교육 참여 여부, 학습자 수요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- ② 학습자는 특정 강사를 지정하여 강좌 배정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18조(현장 점검)

대덕구 평생학습원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배달강좌 운영과 사후 만족도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학습자 및 강사는 현장 점검시 요청하는 점검사항(출석현황, 학습 환경 점검 등)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
제19조(강좌 폐강)

- ① 학습자와 강사의 상호 협의로 강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폐강 할 수 있다.
- ② 강사 자격이 정지된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폐강(학습 종료)한다.
- ③ 운영계획서와 상이하거나 변경 승인 없이 진행된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.
- ④ 출석률이 50% 이하로 3회 초과되는 회차부터 자동으로 폐강한다.
- ⑤ 그 외 담당 부서의 판단으로 강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.